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원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583

발의연월일: 2021. 3. 5.

발 의 자:이원욱 ·김민기 ·김원이

김철민 • 박홍근 • 변재일

송옥주 · 안호영 · 유정주

윤영찬 • 이광재 • 이규민

이수진 · 최혜영 · 한병도

홍성국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원격수업 또는 부분 등교를 실시함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 또는 축소되고,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맞벌이로 인하여 가정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학교급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.

특히 성장발달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지속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함에도 재난 등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.

이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재난 등의 사유로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학교급식 소외계층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지원 등을 심

의하도록 하고, 원격수업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(안제5조제1항제3호 및 제9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원격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 현황 조사 및 지원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원격수업의 진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려운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급식을 지원할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학교급식위원회 등) ① 교	제5조(학교급식위원회 등) ①
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	
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	
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	
회를 둔다.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
	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
	난이 발생하여 학교가 「초
	·중등교육법」 제24조제3항
	제1호에 따른 원격수업을 진
	행하게 되는 경우 제9조제2
	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
	당하는 학생에 대한 학교급
	<u>식 현황 조사 및 지원</u>
<u>3.</u> (생 략)	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9조(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)	제9조(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)
①・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
	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24조제3
	항제1호에 따른 원격수업의 진
	행으로 학교에서의 급식이 어

점은 경우 배달급식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 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학 교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한다.